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檢討報告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4. 11

行政委員會 專門委員 金基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檢討報告書

1. 경 과

의안 제280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05년부터 제정·운용하고 있는 청사건립 기금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낮아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바, 동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 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조례(2005년1월5일 제정,「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여, 현재 청사건립기금의 적립잔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사건립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된 163억원과 이자수입 35억 6,324만 1천원이 적립되어 총 198억 6,324만 1천원이 조성되었으나, 이 중 **7천 479만원을 지출**1)하여 3월말 현재 197억 8,845만 1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붙임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참조】

통합기금에 197억 8,844만 2천원, 일반예금(부서 예치금) 으로 9천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기금 예치금중 197억원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예탁하였음.

○ 조례 폐지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5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었으나, 2010년 행정안전부의「지자체청사 리모델링 확산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청사건립 추진이 장기간 유보되었고.

¹⁾ 제2청사 타당성용역 학술연구 22,000천원(2009년도), 구청사 정밀안전 진단용역 52,790천원(2011년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에서 차입한 197억원의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2023년 까지 매년 20~30억원의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재정에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통합기금 워리금 상화 추이 >

(단위: 백만원)

회계년도	융자액 계 (A)	상환대상 금액			융자잔액
		계	원금(B)	이 자 (A*2%)	(C=A-B)
2015년도	22,6202)	2,359	1,907	452	20,713
2016년도	20,713	2,321	1,907	414	18,806
2017년도	18,806	2,283	1,908	376	16,898
2018년도	16,898	2,245	1,908	338	14,990
2019년도	14,990	3,300	3,000	300	11,990
2020년도	11,990	3,240	3,000	240	8,990
2021년도	8,990	3,180	3,000	180	5,990
2022년도	5,990	3,120	3,000	120	2,990
2023년도	2,990	3,050	2,990	60	0

※ 원리금 상환기준 :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2%

○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2호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 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²⁾ **22,620백만원 = 7,630백만원** [11,620(2010년도 융자금) - 3,990(2014년도 상환액)] **+ 14,990백만원(2014년도 융자금)**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기금의 일반회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부담을 해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조례 폐지에 따라 실제로 일반회계에 전입될 기금규모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제외하면 8,844만 2천원(통합기금 예치금)정도로써, 세입규모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별 첨】

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현황(2014. 3. 31현재)

(단위 : 천원)

년도	수 입 액			지출액	최 ㅂㅇ애
	출연금	이자액 등	소 계	시물액	현 보유액
총계	16,300,000	3,563,241	19,863,241	△74,790	19,788,451
2005	1,000,000	-	1,000,000	-	1,000,000
2006	1,000,000	34,010	1,034,010	_	1,034,010
2007	12,300,000	93,362	12,393,362	-	12,393,362
2008	1,000,000	578,010	1,578,010	-	1,578,010
2009	1,000,000	989,097	1,989,097	△22,000	1,967,097
2010		709,702	709,702		709,702
2011	-	367,770	367,770	△52,790	314,970
2012	-	324,584	324,584		324,584
2013	-	405,978	405,978		405,978
2014.3월	-	60,728	60,728		60,728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 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30.]